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책

직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면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에 **(877) 632-4996**으로 전화하세요.

근로자의 책임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세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후 **30일**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세요. 문자로 보내지 마세요.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편지, 이메일 또는 기타 문서 형태로 보내세요.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이 있음을 알리고 고용주의 산재 보상 보험회사 이름을 알려주세요. 고용주의 보험회사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용주 또는 WCB에 바로 문의하세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WCB 및 근로자의 고용주 또는 보험회사에 진료 기록을 제출할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 기록을 WCB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부상/질병에 관해 **근로자 청구서(Employee Claim, 양식 C-3)**를 작성해서 WCB에 보고하세요. 2년 이내에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WCB에 알려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신체 부위를 다쳤거나 이와 유사한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 경우, **제한적 건강 정보 공개(Limited Release of Health Information, 양식 C-3.3)**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은 산재 보상 요건이 아닙니다.**

청구서 제출 방법

가장 빠른 방법: 웹사이트 **wcb.ny.gov**를 방문하여 “File a Claim(청구서 제출)”을 선택하세요.

양식 C-3 제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양식 사본을 받으려면 **(877) 632-4996**으로 전화하세요. WCB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의료 및 이동 경비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산재 보상 혜택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고용주의 산재 보험회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보험회사가 근로자의 케이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WCB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WCB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거나, 근로자가 이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병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또는 근로자의 의료 보험회사에 해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산재 보상 보험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하는 의약품 및 기기를 보상합니다. 치료를 위해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마일리지, 대중 교통 또는 기타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청구인의 의료 및 이동 경비 기록 및 환급 요청서(Claimant's Record of Medical and Travel Expenses and Request for Reimbursement, 양식 C-257)**를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있는 경우)과 함께 WCB에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WCB에서 승인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cb.ny.gov**에서 “Health Care Provider Search(의료 제공자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지역의 승인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Occupational Health Clinic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산재 보상 보험회사에 산재 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우선 제공자 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이 있는 경우, PPO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또한 약국 또는 진단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자체 필수 제공자 네트워크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 시에는 모든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된 임금에 대한 혜택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손실 임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되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달력 기준 7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 및/또는
3. 현재 업무 시간이 줄었거나 업무가 변경되어 급여가 줄은 경우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된 후 더 이상 의학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사고/질병이 생긴 날로부터 1년 후 또는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후 1년 후), 근로자는 담당 의사에게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구적인 부상/질병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cb.ny.gov에서 “Workers(근로자)” 섹션을 클릭한 다음 “Disability Classifications(장애 분류)”를 선택하세요.

청구와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 또는 면허가 있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은 고용한 변호사나 면허가 있는 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습니다. WCB가 그들의 수수료를 승인하고, 추후 근로자의 손실된 임금 보상에서 차감합니다.

청구에 이의가 제기되어 WCB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근로자는 장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 청구에 대한 통지 및 증명(Notice and Proof of Claim for Disability Benefits, 양식 DB-450)**을 구하려면 wcb.ny.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WCB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WCB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청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경우, 장애 급여는 손실된 임금 보상에서 차감됩니다.

후속 절차

산재 보험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청구가 수락되면 산재근로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고 손실된 임금 혜택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WCB에서 연락할 것입니다. 청문회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이 있습니다.

- **eCase:** 산재근로자의 청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WCB의 eCase 시스템을 통해 케이스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볼 수 있습니다. eCase를 이용하려면 wcb.ny.gov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가상 청문회:** WCB 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가상 청문회를 통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wcb.ny.gov/virtual-hearings에서 가상 청문회 및 WCB 무료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움 제공

근로자가 업무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복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대체 업무로 변경하거나 가벼운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WCB의 직업재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원하면 WCB에 연락하세요.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대한 의존성이 걱정되면, NYS OASAS HOPELine에 **877-8-HOPENY(877-846-7369)**로 전화하세요.

중요 연락 정보

| | | |
|-----------------------------|----------------|-------------------|
| Workers' Compensation Board | (877) 632-4996 | claims@wcb.ny.gov |
| | | wcb.ny.gov |

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PO BOX 5205
Binghamton, NY 13902-5205



Workers' Compensation Board